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신청 대상자를 「민법」 상 친족까지 확대 등〉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43, 2218445,
221844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개요	1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 개요	8
2. 등록신청 대상자 확대 (특수임무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	11
3.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직권 기록 제도 신설 (특수임무유공자법) ...	16

I. 개요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6. 4. 20.
- 3) 회부일 : 2026. 4.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

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6. 4. 20.
- 3) 회부일 : 2026. 4.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6. 4. 20.
- 3) 회부일 : 2026. 4.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대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써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 3건의 개정안¹⁾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공자의 「민법」상 친족²⁾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특수임무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u>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44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446호)

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 ----- ----- -----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 략) <신 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② ~ ④ (생략)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

·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5항까지의----- ----- ----- -----.
---	--

1. 개정안 개요

- 현행법³⁾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유공자 등에 해당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공자 등의 등록에 관하여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음.

-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청 대상자가 모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 대상자가 없어 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⁴⁾⁵⁾

- 그런데, 현행법이 유공자의 등록에 관하여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무연고 전사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고,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⁶⁾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5)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 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 기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6) “무연고 전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위한 합동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2026. 5. 18.,
“직계가족 없어 국가유공자 못 됐던 故 김선일 소령, 75년 만에 유공자 예우”, 조선일보, 2026. 6. 25.

□ 이에, 개정안은 ①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공자의 「민법」상 친족이 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②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신청 대상자가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여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개요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 유공자법	독립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독립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등록신청 대상자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		
	-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유공자의 「민법」상 친족		
직권 기록 및 예우	○	○	×	○	○	○

2. 등록신청 대상자 확대(특수임무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가 직계혈족⁷⁾ 등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가 없어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에 의한 공훈선양사업⁸⁾을 보완하여 국가의 예우책임⁹⁾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 경로 확대를 통하여 미등록 유공자의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희생·공헌자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보훈관계법률의 입법목적¹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등록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에 관하여는 유공자 등록에 관한 국가보훈관계법률의 체계,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보상수급권의

7)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8)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 5. (생략)

9)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질,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입법취지의 달성 가능성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¹¹⁾ “등록”은 신청 대상자에게 공법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고, “등록신청”은 그 처분을 구하는 행정요건적 공법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보훈관계법률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당 예우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 같은 취지에서, 국가보훈관계법률은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점을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특정하여 규정하고,¹³⁾ 권리의 소멸시점은 대상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하면서, 등록신청 대상자에게 유공자 등의 사망 등에 대한 변동신고 의무를 부여하며,¹⁴⁾

11)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361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구단11617 판결 등 참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자 외에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등록신청을 신청 대상자의 신청으로 간주하고 있음.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¹⁵⁾하는 등 등록 및 보상 관련 절차 등에 있어 신청 대상자의 법률행위를 연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표 2] 국가보훈관계법률상 법 적용 대상자 및 등록신청 대상자 범위

구분	독립 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5·18 유공자법	참전 유공자법
법 적용 대상자 (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등록신청 대상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유족 또는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미규정)

○ 또한,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보상수급권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¹⁶⁾로서 보상수급권의 대상자, 우선순위 등이 법률에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신청인
 2. ~ 8. (생략)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

의하여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신청을 통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신분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신분과 결부되어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권리 당사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등록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등록신청 대상자 확대 외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유공자를 기록·예우하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법」상 친족에게 등록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유공자를 직권으로 기록하는 절차에서 친족 등이 관련된 내용을 제보·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¹⁷⁾¹⁸⁾¹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17)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은 피해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실규명·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국가보훈부는 현재도 친족 등의 제보 및 신고를 통해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임(독립유공자의 경우 관련 사료를 토대로 공적심사를 진행하므로, 현재도 신청인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시로 입증자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신청 대상자”로 약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앞선 조항에서 “신청 대상자”를 약칭할 필요가 있으며,

유공자의 「민법」상 친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유공자 본인에 한정하는 것인지 그 유족에 대한 등록까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등록신청권자의 범위를 「민법」상 친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등록신청이 단순한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는 절차임을 고려하여 볼 때 법 적용대상이 아닌 친족에게 별도의 등록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보훈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신청자인 친족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등록결정에 의하여 어떠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직권 기록 제도 신설(특수임무유공자법)

- 현행법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 대상자가 없는 무연고 유공자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등록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특수임무유공자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희생과 공헌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률에서 “신청 대상자”를 약칭하고 있지 않고, 관련 조문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²⁰⁾ 법문언의 통일성을 위하여 해당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국가의 예우책임 실현 및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도 국가의 직권 기록 제도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9. (생략)

문 의 처
02)6788-5112